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5

제출연월일 : 2003년 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이유

- 새로운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일과 기능중심의 효율적인 기능·인력배분을 위하여
- 조직진단 및 도정조정위원회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기구와
소관사무를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행정기구 기능 조정

- 기획관리실 「도정혁신기획단」 신설 (한시기구)
- 행정부지사 직속 「총무과」 → 자치행정국으로 이관
-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 → 기획관리실로 이관
- 농업기술원 「종자생산시험장」·「잠사균이시험장」
+ 종자보급소 → 「농산사업소」로 통합
- 축산위생연구소 + 내수편연구소 → 「축수산연구소」로 통합
- 여성회관 → 「여성발전센터」로 전환 및 기능 보강

○ **실·국 및 소속기관의 소관사무 조정**

- 기획관리실장 : 정보통신, 도정혁신업무 추가
- 자치행정국장 : 총무업무 추가, 정보통신업무 삭제
- 농업기술원장 : 종자생산 및 잠사균이 시험검사 삭제
- 건설종합본부장 : 하천업무 삭제
- 축수산연구소장 : 내수면시험연구 추가
- 농산사업소장 : 종자생산·보급 및 잠사균이 시험검사 신설
- 여성발전센터소장 : 여성발전연구업무 신설

☐ **의안전문** : 따로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국·도정 주요정책과제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3. 광역조정에 관한 사항
4. 도·시군 행정기구·정원 및 조직관리
5. 주요 행정시책의 확인 및 평가
6. 의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7. 각종 통계조사·분석 및 자료관리
8. 도 예산 편성 관리 및 시군 재정 지도
9. 주요사업 투자심사 및 도·시군의 지방공기업 육성 지도
10. 조례·규칙의 심사·공포, 소송사건 및 법규의 편찬에 관한 사항
11. 정보통신 및 행정전산화에 관한 사항
12. 도정혁신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의전·행사, 보안, 문서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인사, 교육고시, 복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3. 자치행정 일반, 행정구역 및 여론동향에 관한 사항
4. 시·군행정 및 인사운영 지도·조정·협의
5. 행정능률, 민원, 민간협력 및 선거사무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세입관리, 세무지도, 재산관리와 기부금품모집 통제에 관한 사항
7. 예산의 지출·결산 업무
8. 민방위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종자 및 잠종 생산·보급에 관한 사항

제23조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 제11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제9호 내지 제11호로 한다.

제24조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②특화작목시험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5조제1항중 “도로·하천 유지보수의 원활한 수행”을 “도로 유지보수의 원활한 수행”으로 한다.

제37조제11호를 삭제한다.

제4장제4절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제42조 내지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절 충청북도축수산연구소

제42조(설치) ①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의 검사와 분석, 가축질병의 방역과 검정, 가축개량 보급 및 담수어 양식에 관한 시험연구와 내수면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축수산연구소(이하 “축수산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축수산연구소는 충청북도 청원군 관내에 둔다.

제43조(소장) 축수산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4조(소관사무) 축수산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축산물의 검사·분석과 가축질병의 방역 및 검정
2. 축산위생에 필요한 검사·시험연구
3. 가축의 개량 및 우량종축의 보급
4. 축산 및 사료에 관한 시험연구
5. 내수면 개발 및 담수어 양식에 관한 사항

제45조(지소) 축수산연구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제7절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제52조 내지 제54조) 및 동장제8절 충청북도종자보급소(제55조 내지 제5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5절 충청북도여성화관(제46조 내지 제48조)을 동장제7절 충청북도 여성발전센터(제52조 내지 제54조)로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절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제52조(설치) ①지방자치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여성들에게 사회교육을 통해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활동의 영역을 확대하여 지방화, 정보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기능적인 여성공동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이하 "여성발전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여성발전센터는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

제53조(소장) 여성발전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4조(소관사무) 여성발전센터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여성사회교육 활성화를 위한 여건 및 기반조성
2. 여성사회교육 및 여성 기술인력 양성

3. 여성발전 연구개발 및 여성정보자료실 운영

4. 여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4장제5절에 충청북도농산사업소(제46조 내지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충청북도농산사업소

제46조(설치) ①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 원종 및 보급종의 생산·공급을 원활히 하고, 우량 잠종의 생산 보급을 위하여 충청북도농산사업소(이하 “농산사업소”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농산사업소는 충청북도 진천군 관내에 둔다.

제47조(소장) 농산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농산사업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8조(소관사무) 농산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농산물 원종생산 및 품종개량에 관한 사항
2. 농산물 우량종자 생산·보급에 관한 사항
3. 잠종·상묘의 생산·보급과 시험검사에 관한 사항
4. 기능성 양잠산물 개발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중 충청북도증평소방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충청북도증평소방서	증평군 관내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일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기획관리실 “도정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은 2006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정보통신과장”을 “정보통신담당관”으로 한다.

②충청북도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12조제4항중 “정보통신과장”을 각각 “정보통신담당관”으로 한다.

③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4항, 제5조 및 별표 4의 분야별란중 “축산위생연구소장”을 각각 “축수산연구소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위임대상기관란중 “물관리과”를 “수질관리과”로 한다.

④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및 제10조제3항 중 “정보통신과장”을 각각 “정보통신담당관”으로 한다.

⑤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중 “기술보급부장”을 각각 “기술보급국장”으로 한다.

⑥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2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중 “축산위생연구소”를 각각 “축수산연구소”로 한다.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중 “축산위생연구소장”을 각각 “축수산연구소장”으로 한다.

⑦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여성회관”을 “여성발전센터”로 한다.

제1조 내지 제3조중 “여성회관”을 각각 “여성발전센터”로 하고,

제2조중 “여성회관장”을 “여성발전센터소장”으로 한다.

제2조,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중 “관장”을 각각 “소장”으로 한다.

[별표 1]

농업기술원 특화작목시험장의 명칭과 위치

명 칭	위 치
옥천포도시험장	옥천군 관내
단양마늘시험장	단양군 관내
음성사설농업시험장	음성군 관내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기	정	안
제6조(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광역조직에 관한 사항 3. 주요 행정시책의 확인 및 평가 4. 도정 주요정책개발·심의·조정 5. 의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6. 도정전반의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7. 도 예산 편성 관리 및 시군 재정 지도 8. 주요사업 투자심사 및 도·시군의 지방공기업 육성 지도 9. 조례·규칙의 심사·공포, 소송사건 및 법규의 편찬에 관한 사항 10. 통계의 처리와 유지관리		제6조(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국·도정 주요정책과제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3. 광역조정에 관한 사항 4. 도·시군 행정기구·정원 및 조직관리 5. 주요 행정시책의 확인 및 평가 6. 의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7. 각종 통계조사·분석 및 자료관리 8. 도 예산 편성 관리 및 시군 재정 지도 9. 주요사업 투자심사 및 도·시군의 지방공기업 육성 지도 10. 조례·규칙의 심사·공포, 소송사건 및 법규의 편찬에 관한 사항 11. 정보통신 및 행정전산화에 관한 사항 12. 도정혁신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행정 일반, 행정구역, 선거·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2. 시·군행정 및 인사운영 지도·조정·협의 3. 도·시군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4. 행정권한의 재배분 및 위임·위탁 5. 행정능률 향상,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세입관리, 세무지도, 재산관리와 기부금품모집 통제에 관한 사항 7. 예산의 지출·결산 업무 8. 지역정보화, 정책 개발·심의·조정 9. 전산행정 및 행정물자에 관한 사항 10. 민방위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제7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외전·행사, 보안, 문서 및 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인사, 교육고시, 복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3. 자치행정 일반, 행정구역 및 여론동향에 관한 사항 4. 시·군행정 및 인사운영 지도·조정·협의 5. 행정능률, 민원, 민간협력 및 선거사무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세입관리, 세무지도, 재산관리와 기부금품모집 통제에 관한 사항 7. 예산의 지출·결산 업무 8. 민방위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제4절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제4절 충청북도축수산연구소

제42조(설치) (1)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의 검사와 분석, 가축질병의 방역과 검정, 가축개량 및 보급 관련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 (이하 "축산위생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축산위생연구소는 충청북도 청원군 관내에 둔다.

제43조(소장) 축산위생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4조(소관사무) 축산위생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축산물의 검사·분석과 가축질병의 방역 및 검정
2. 축산위생에 필요한 검사·시험연구
3. 가축의 개량 및 우량종축의 보급
4. 축산 및 사료에 관한 시험연구

제45조(지소) 축산위생연구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설치) (1)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의 검사와 분석, 가축질병의 방역과 검정, 가축개량 보급 및 담수어 양식에 관한 시험연구와 내수면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축수산연구소 (이하 "축수산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축수산연구소는 충청북도 청원군 관내에 둔다.

제43조(소장) 축수산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4조(소관사무) 축수산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축산물의 검사·분석과 가축질병의 방역 및 검정
2. 축산위생에 필요한 검사·시험연구
3. 가축의 개량 및 우량종축의 보급
4. 축산 및 사료에 관한 시험연구
5. 내수면 개발 및 담수어 양식에 관한 사항

제45조(지소) 축수산연구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제5절 충청북도여성회관

제46조(설치) ①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여성들에게 사회교육을 통해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활동의 영역을 확대하여 지방화, 정보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기능적인 여성공동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여성회관은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

제47조(관장) 여성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8조(소관사무) 여성회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여성사회교육 활성화를 위한 여건 및 기반조성
2. 여성사회교육 및 각종 토론회 개최
3. 여성정보자료실 운영
4. 여성 기술인력 양성
5. 각종시설물 대여자업
6. 정부시책의 계몽지도 및 여성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제5절 충청북도농산사업소

제46조(설치) ①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 원종 및 보급종의 생산·공급을 원활히 하고 우량 잡종의 생산 보급을 위하여 충청북도농산사업소(이하 "농산사업소"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농산사업소는 충청북도 진천군 관내에 둔다.

제47조(소장) 농산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농산사업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8조(소관사무) 농산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농산물 원종생산 및 품종개량에 관한 사항
2. 농산물 우량종자 생산·보급에 관한 사항
3. 잡종·상묘의 생산·보급과 시험검사에 관한 사항
4. 기능성 양감산물 개발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제7절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제52조(설치) ①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여성들에게 사회교육을 통해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활동의 영역을 확대하여 지방화, 정보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기능적인 여성공동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이하 "여성발전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여성발전센터는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

제53조(소장) 여성발전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4조(소관사무) 여성발전센터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여성사회교육 활성화를 위한 여건 및 기반조성
2. 여성사회교육 및 여성 기술인력 양성
3. 여성발전 연구개발 및 여성정보자료실 운영
4. 여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제7절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제52조(설치) ①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수어 양식에 관한 시험연구와 내수면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연구소는 충청북도 충주시 관내에 둔다.

제53조(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4조(소관사무) 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담수어 양식에 관한 시험 연구
2. 담수어 종묘생산 보급 및 희귀어종 양식
3. 지역 특성어종 양식기술 개발 보급
4. 양어기술 지도교육 및 양식 적지 조사
5. 기타 담수어 양식에 필요한 사항

<삭 제>

제8절 충청북도종자보급소

제55조(설치) ①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종 종자생산 및 보급을 위하여 충청북도종자보급소(이하 "종자보급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종자보급소는 충청북도 제천시 관내에 둔다.

제56조(소장) 종자보급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7조(소관사무) 종자보급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보급종자 생산계획 수립
2. 벼, 보리, 콩, 옥수수 보급종 채종포장 지정 및 포장관리
3. 벼, 보리, 콩, 옥수수 보급종 종자수매 계획 수립 및 수매
4. 기타 벼, 보리, 콩, 옥수수 보급종 점선
5. 종자보급계획수립 및 예시
6. 보급종자 민원사항 처리(옥수수는 전국)
7. 보급종자 홍보

<삭 제>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5조 (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의 정원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 및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⑥한시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시·군·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